

고 소 인 지 정 서

사 건 명	피의사건
신 청 인	
피 해 자와 의 관 계	
피 신 청 인 (피 의 자)	

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인 지정신청이 있는바,

「형사소송법」 제228조

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이를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인정되므로, 제6조제3항 에 따라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10조의4제3항

신청인(또는 신청 외) 를(을) 고소권자로 지정합니다.

.
○○○ 검찰청

검사

인

고소권자

귀하